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750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6월 28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
겸직허가시 '엄격하게' 심사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안 제35조제3항 중 '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'를 지방공무원의
겸직허가에 관해 규율하는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를
준용하여 심사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함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, 「지방
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기타사항 :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35조제3항 중 “관하여”를 “대해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
규」를 준용하여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의장은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견직허가 시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를 준용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.

④ 의장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에 대한 견직허가 현황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